##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49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이주환・金炳旭・김용판

김예지 · 김정재 · 박대출

최승재 · 서병수 · 윤창현

서일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·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·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음.

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·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 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

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·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25조 등).

법률 제 호

###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하천의 이용"을 "하천의 이용, 주민친화적 활용"으로 한다.

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하천관	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
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	
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<u>하천의 이용</u> 및 자	<u>하천의 이</u>
연친화적 관리·보전에 필요한	용, 주민친화적 활용
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	
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	
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64조(비용보조) 국토교통부장관	제64조(비용보조)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	
일부를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.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
	<u>비공사</u>
<u>2.·3.</u> (생 략)	<u>3.•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	같음)